

난민 아동 학대 대응 가이드



CONTENTS

I	들어가며	5
II	원칙	6
	1. 비차별의 원칙	6
	2. 아동 최선의 이익의 원칙	6
	3. 아동 의견 존중의 원칙	6
	4. 원가정 보호의 원칙	7
III	국내법과 난민 아동	9
IV	아동학대 대응 업무절차	11
	1. 개요	11
	2. 아동학대 업무의 구분	12
	3. 아동학대 개입 절차	14
V	아동학대 절차에서 난민인권활동가의 역할	20
	1. 목적/신고	20
	2. 아동학대에 대한 민감성	24
	3. 난민인권활동가의 예상 가능한 우려에 대한 대응	25
	4. 조사 과정	27
부록	아동학대 관련 난민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 규정	37

I 들어가며

대한민국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국가 중 하나로,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이 누구든지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따라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난민 아동은 아동으로서 가진 특별한 욕구에 더해 이주 배경 및 체류 지위, 문화적, 사회경제적 배경으로 인해 더욱 취약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난민 아동의 학대 현황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는 보고된 바 없으나, 이주아동의 학대 현황에 비추어 보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¹⁾ 이에 난민인권활동가와 아동학대 관련 실무자들은 난민 아동의 학대 문제를 종합적으로 인지하여 난민 아동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난민 아동학대 발견 시 난민인권활동가²⁾를 위한 적절한 지침이나 자료는 드물다. 이에 난민인권네트워크 난민아동실무그룹은 난민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난민 아동학대 발견 시 대응 절차를 정리하였다. 이 가이드의 목표는 아래와 같다.

▶ 그림 1 | 난민인권네트워크 난민아동실무그룹에서 제시한 가이드의 목표

- 아동학대에 대한 국내 개입 절차를 통해 미등록, 난민신청자, 난민인정자, 인도적 체류자격자 및 난민 가정의 모든 아동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다.
- 난민인권활동가들이 아동학대 발견 시 해야 할 일과 알아야 할 절차 및 정보를 제공한다.
- 아동학대 관련 실무자들이 난민 아동의 특수성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 난민 관련 실무자, 아동학대 관련 실무자, 법률가, 사회복지사의 협업을 촉진한다.

1) 경향신문, “이주아동 학대 피해, 4년간 5.5배나 늘었다.” (2019.10.2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910212214005

2) 이 가이드에서 ‘난민인권활동가’란 인권과 인도주의에 기반하여 난민 보호 및 지원에 관여하는 실무자를 뜻하며, 민간단체 활동가, 공익 또는 인권 변호사, 의료보건의료 종사자, 유관기관의 사회복지사 등을 가리킨다.

II 원칙

1 비차별의 원칙

대한민국에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의거해 난민 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이 “인종이나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어떤 종류의 차별로부터도 보호받아야” (제2조) 하나, 실제 난민 아동의 아동학대를 보호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내 아동 보호체계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2 아동 최선의 이익의 원칙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9조에 따라 “아동은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나 유기적 대우, 성적 학대를 포함한 혹사나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같은 협약 제3조는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 최선의 이익(best interests of the child)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3 아동 의견 존중의 원칙

난민인권활동가는 모든 절차와 내용에 대하여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절차에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아동에게 적절한 언어와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아동친화적인 상황을 조성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필요시 개입(intervention)하고, 아동의 의사를 이유로 결정을 미루지 않는다. 아동의 의사는 존중되어야 하나 가정 복귀 요건이 미비하거나 재학대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정 복귀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에 대한 결정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하는 것이지만, 현장에서 재학대 발생 우려를 발견한다면 이를 아동학대 실무자에게 전달하여 적절한 판단을 하도록 돕는다.

4 원가정 보호의 원칙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가정은 “아동의 성장과 복지를 위한 자연적 환경으로서 가족에게는 공동체 안에서 그 책임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호와 원조가 부여되어야” 한다. 이에 아동학대가 발생한 가정이 그 가족기능을 회복하도록 지역사회와 자원과 복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가족적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다. 아동복지법이 아동에게 “안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랄 권리가 있다”(제2조 제2항)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1) 원가정에서 보호되는 경우

학대 피해 아동의 대부분은 장기적으로 학대 행위자와 함께 원가정에서 자라날 가능성이 높다. 아동이 성장하는데 가정의 역할을 대신할 곳이 많지는 않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방임의 경우 아동을 분리하기보다는 원가정을 아동 양육을 위한 적절한 환경으로 개선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하여 아동을 원가정에 방치하여서는 안 된다. 적절한 가정 개입을 통해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 분리조치 후 원가정으로 복귀되는 경우

대부분의 아동학대 초기 및 최종 조치 결과로, 피해 아동은 원가정 보호의 원칙에 따라 학대 행위자가 있는 가정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선부른 아동의 원가정 복귀는 재학대를 초래한다. 실제 재학대 사례 중 원가정 보호가 지속된 사례는 69%로 가장 높은 편이었다(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8년 아동학대 주요통계).

난민 가정은 난민신청 및 정착 과정에서의 극심한 스트레스와 경제적 어려움,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해 보호자가 스스로 아동 양육에 적절한 환경까지 조성하기 어

려운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보호자를 조력하는 난민인권활동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또는 사례관리사가 협력하여 보호자가 아동친화적인 가정환경을 조성하고 올바른 훈육을 하도록 도와야 한다. 더불어 난민신청 및 정착 과정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해당 난민 가정의 난민신청절차 결과가 신속히 나오도록 조력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

주의: 원가정 복귀와 개입에 대한 판단은 아동학대 관련 전문가가 하도록 하고, 난민인권활동가는 아동학대 관련 전문가의 결정을 돕기 위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난민 가정 지원 자원을 연결하는 것에 더 집중해야 한다.

III 국내법과 난민 아동

한국의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고(제1조), 아동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는다는 ‘비차별’과 ‘아동 최선의 이익의 고려’를 원칙으로 밝히고 있다(제2조 제1항, 제3항). 또한 아동복지법에는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자라는 것과 보호와 지원이 아동의 권리로 명시되어 있다(제2조 제2항 및 제4항).

「아동복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 이념) ①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②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③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④ 아동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아동복지법의 목적과 원칙을 고려하면, 아동복지법은 대한민국 국적이든 외국 국적이든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적용되고, 아동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아동이 보호받을 권리를 실현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한국에는 아동학대를 집중하여 다루고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아동학대 대응 업무에 적용하고 있다. 이 법은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와 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분을 규정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제1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및 아동학대 행위자에게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 역시 난민 아동을 포함한 이주아동을 법 적용에서 배제하고 있지 않고, 아동의 정의(제2조 제1호), 아동학대의 정의(제2조 제3호)는 아동복지법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 대한 학대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3.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를 말한다.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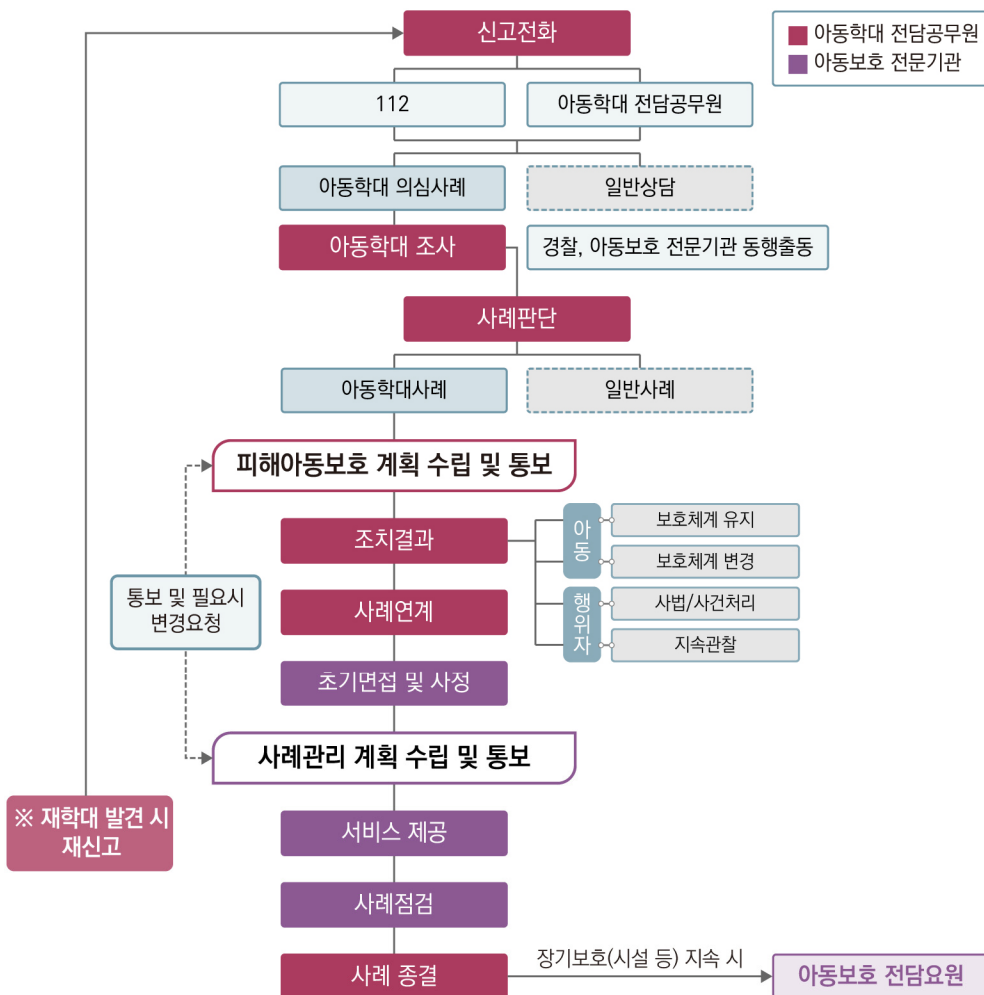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현행법이 명시적으로 난민 아동을 배제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난민 아동이 학대 피해를 당한 경우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IV 아동학대 대응 업무절차

1 개요³⁾

그림 2 | 아동학대 대응 업무진행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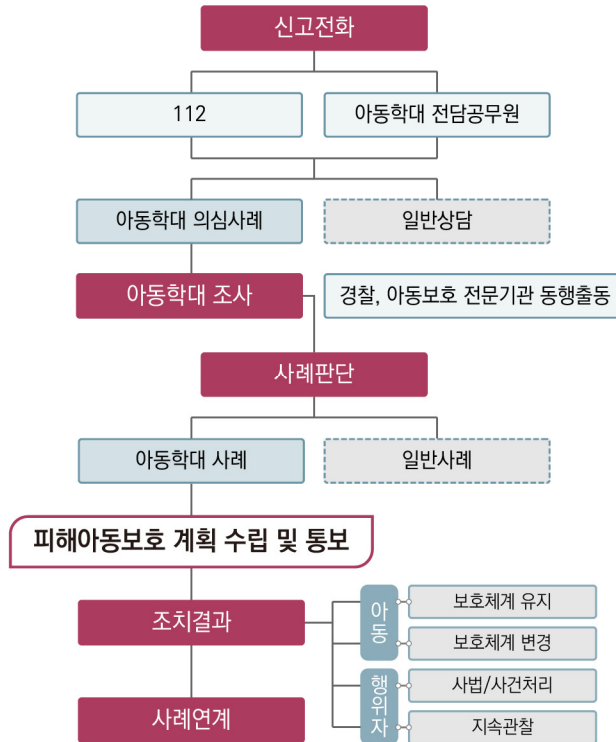


3)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보호 전문기관 업무진행도 및 사법절차” (2020)를 일부 수정함.
<http://www.ncrc.or.kr/ncrc/cm/cntnts/cntntsView.do?mi=1030&cntntslid=1033>

2 아동학대 업무의 구분

아동학대에 대한 업무는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조사(가)와 가정에 대한 사례관리(나)로 나뉜다. 2020년 아동학대처벌법이 개정되어, (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담당하고, (나)는 관할 아동보호 전문기관(「아동복지법」 제45조)에서 담당한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112로 접수된 신고에 대해 아동학대 의심상황 정보를 파악하여 즉각 현장출동을 한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 조사를 통해 확인된 자료를 근거로 아동학대 사례인지 혹은 일반사례인지를 사법경찰과 함께 판단하게 된다. 다만,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최근에 개편되어 2022년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므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미배치된 지역은 기존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해당 업무를 수행한다.

그림 3 | 아동학대 조사절차



아동학대의 사례관리란 아동의 안전 및 가족기능의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기반으로 한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아동 및 아동을 둘러싼 주요 보호자와의 관계를 통하여 사정, 사례 관리계획, 개입부터 사례 종결까지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때 사례관리의 대상은 아동학대 혐의 사례로 판단된 가구로서 아동, 학대 행위자 및 가족 구성원을 모두를 포함한다.

그림 4 | 아동학대 사례관리 과정



3 아동학대 개입 절차

한국의 아동학대 개입 절차는 사법적 접근 외에 복지적 접근도 있다. 아동학대 신고가 오히려 아동에게 불이익한 상황을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는 아동학대 신고를 범죄 신고와 처벌 절차로만 이해하는 데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사실 대부분의 경우 아동학대에 대한 개입은 사회복지서비스에 접근하여 학대 행위자를 교육하고, 상담을 지원하는 등 학대 행위자를 포함한 가정을 지원하는 일이다. 예를 들면, 심각하지 않은 방임과 같이 올바른 양육에 대한 안내로 충분히 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상담과 교육 등의 접근이 적용된다.

그러나 학대 행위가 심각하고 당장 아동의 안전을 위협하여, 피해 아동과 학대 행위자를 분리하고 친권 내지 후견인의 권한을 정지할 정도의 처분이 필요한 경우라면 사법심사가 필요하다. 사법절차는 다시 피해 아동에 대한 개입 절차와 학대 행위자에 대한 개입 절차로 나뉜다. 피해 아동의 보호를 위해서는 응급조치나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이 활용되고, 학대 행위자에 대해서는 임시조치, 아동보호처분 또는 형사사건으로 처리된다.

1) 신고 및 인계

아동학대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든 바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아동학대 신고 전화는 현재 112로 통합운영 중이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의무자'를 법률로 지정하고 있다. 하지만 신고의무자가 아닌 사람도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신고할 수 있다(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1항). 난민인권활동가는 법이 지정한 신고의무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난민과 가장 가깝게 소통하고 지원하는 사람이므로 아동학대범죄 발견 시 즉시 신고하여야 할 것이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2) 분리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실천

심각한 위해가 우려되는 아동학대 현장에서는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해 출동을 요청해야 한다. 이때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서 학대 피해 아동과 그 형제자매를 보호한다. 분리한 이후에는 학대 피해 아동뿐 아니라 형제자매 등 다른 아동의 안전을 위해 분리된 장소를 학대 행위자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한편,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를 미루며 권한 없는 자가 임의로 장기간 아동을 분리하는 경우, 위법한 보호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3) 피해 아동 및 아동학대 행위자에게 대한 조치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사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학대 행위자와 아동을 긴급하게 분리할 필요가 있는지에 따라 원가정 보호와 응급조치로 나뉜다. 이는 경찰 및 병원, 아동 및 행위자 대면조사, 주변인 조사, 위험도 평가 척도 사정 등을 근거로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사례회의를 통하여 판단된다.

원가정 보호로 결정되는 경우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다.

- 학대의 위험도가 높지 않음
- 가정 내에 학대 피해 아동을 보호할 수 있고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음
- 보호자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협조적이고 기관방문이 가능하거나 상담원의 가정방문이 가능함
- 의뢰 및 연계 기관에서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협조적 관계에 있으며 가정 내 서비스에 대한 공통된 인식이 있음

원가정 보호 사례의 경우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이 제공되는데, 아동학대 행위자가 적절한 보호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및 상담, 가정 내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등의 지원이 포함된다. 또한 아동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이 동거하지 않더라도 서로 대면하는 빈도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가 개입된다.

가. 피해 아동 응급조치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경찰 또는 공무원은 피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즉시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아동학대범죄 행위의 제지: 학대 행위자가 피해 아동에 대해 학대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제재하는 것
- 아동학대 행위자를 피해 아동으로부터 격리: 최장 72시간 동안 피해 아동으로부터 학대 행위자를 분리
- 피해 아동을 보호시설로 인도(이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피해 아동의 의사를 존중해야 함)
-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 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

한편, 가정 내 학대의 경우 형제자매와 그 외 동거하는 다른 아동에 대한 조사도 함께 실시된다. 이 아동들이 학대 범죄의 주요 참고인이나 잠재적 피해자로 보이는 경우 이들로부터 학대 행위자를 격리하는 것도 가능하다.

나. 피해아동보호명령("피아보")

아동학대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피해 아동,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 변호사, 지방자치단체장의 청구로 피해아동보호명령을 결정할 수 있다.

피해아동보호명령은 학대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법원이 정하여 명령하는 것이다. 법에는 총 10가지 유형을 정해 놓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래의 명령들은 중복되어 내려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제2호, 제3호, 제6호, 제9호가 필요에 따라 함께 결정될 수도 있다.

표 1 | 피해 아동에 대한 접근금지

1. 아동학대 행위자가를 피해 아동의 주거지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아동학대 행위자가 피해 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아동학대 행위자가 피해 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위의 세 가지는 학대 피해 아동으로부터 학대 행위자를 분리하고, 이들의 접근을 제한하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이다. 문제는 접근금지를 강제하거나 감시할 방안이 적절하지 않아 이 명령을 어기는 일이 많다는 점이다. 학대 피해 아동이나 그 가족의 입장에서는 학대 행위자를 신고하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으므로 접근금지가 잘 준수되고 있는지는 활동가들도 함께 챙길 필요가 있다.

표 2 |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4. 피해 아동을 아동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시설로의 보호위탁
5. 피해 아동을 의료기관으로의 치료위탁
- 5의2. 피해 아동을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소 등으로의 상담·치료위탁
6. 피해 아동을 연고자 등에게 가정위탁

위의 명령들은 아동을 학대 행위자에게서 분리하여 제3자에게 보호를 부탁하거나 상담 또는 치료를 위탁하는 경우이다. 원가정 보호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설보호나 가정위탁보호를 하도록 명령한다. 다만 제5의2호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는 상담소 등으로의 상담·치료위탁은 원가정에서 지내면서 정기적으로 상담과 치료를 받도록 한다.

표 3 | 친권, 후견인 권한에 대한 조치

7. 친권자인 아동학대 행위자간의 피해 아동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8. 후견인인 아동학대 행위자간의 피해 아동에 대한 후견인 권한의 제한 또는 정지
9.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결정

위의 세 가지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학대 행위자인 경우 이들의 권한을 제한하는 명령이다.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개념은 한국의 민법에 정의된 개념이므로, 난민 아동과 그 부모 사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는 국가 및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법원이 친권이나 후견인 권한을 제한하거나 정지하기 위해서는 이를 대신 행사할 후견인의 지정이 필수적이다.

한편, 법원에서 친권자나 후견인의 권한을 정지하지 않고, 이들 대신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제9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결정’이다. 예를 들어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권자가 이 명령을 이용하여 친권 제한이나 정지 없이 방임 또는 유기된 아동의 출생신고를 한 경우도 있다.

피해아동보호명령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지만, 피해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면, 피해 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에 따라 6개월씩 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다(아동학대처벌법 제51조 제1항, 제3항). 또한 아동학대 행위자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이 결정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로 처벌 받을 수도 있다(제59조 제1항 제3호).

다. 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분

이주아동이 학대 피해 아동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처럼, 난민인정자와 난민신청자도 학대 행위자로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아동학대는 형사범죄이고, 살인이나 상해 등 심각한 해를 남기는 경우라면 더더욱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높다. 난민이라고 하여 아동학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최악의 경우 본국으로 송환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아동학대 초기에 개입하여 본국 송환의 위험성을 학대 행위자에게 주지시켜, 학대의 진행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편 이주아동에 대한 아동학대 행위자가 본국으로 피해 아동과 함께 송환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4가 제정되었다(25쪽 **3** 설명 참고).

그러나 집중적인 개입을 통해 가정의 양육환경이 회복되고, 아동이 가정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경우라면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되기도 한다. 아동보호사건의 심리결과 학대 행위자에게 내려지는 보호처분의 종류에는 아래의 8가지가 있다.

1. 아동학대 행위자가 피해 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 아동학대 행위자가 피해 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피해 아동에 대한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수감명령
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6.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감호위탁시설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7.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8.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

이 중 접근금지나 친권제한 보호처분(제1호부터 제3호)을 위반하면 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고(제59조 제1항 제2호), 사회봉사, 수감명령 등의 보호처분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보호처분의 기간이 연장되거나 강화된 보호처분으로 변경될 수도 있다.

V

아동학대 절차에서 난민인권활동가의 역할

1 목격/신고

난민 아동이 피해 아동이 되는 경우는 체류자격과 난민신청, 아동학대의 절차에 관련된 쟁점들이 교차하게 되므로 이에 대하여 세심하게 고려해야 한다. 일단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신고의무자를 포함한 누구나 112에 전화해 신고해야 한다. 2018년 아동학대 주요통계(2018)에 따르면, 비신고의무자 신고비율(72.7%)이 신고의무자⁴⁾ 신고비율(27.3%)보다 약 45% 더 높았다. 신고자는 신고 자체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으며 법률상 보호를 받는다. 그러므로 아동학대가 의심되기만 해도 신고하는 것을 권장한다.

- 신고의무자: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 또는 아동학대범죄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신고: 24시간 신고전화(국번없이 112) 운영. 신고 시 경찰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상호 통보. 일반 상담 후 타 기관 연계
- 유의사항:
 - 아동학대범죄 또는 의심되는 상황에서 활동가가 아동과 상담을 진행할 경우, 아동의 기억이 왜곡될 수 있으므로 상담 전 바로 112를 통한 신고가 권장된다.
 - 보호자가 신고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아동학대의 증거가 은폐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신고 사실을 학대 행위자에게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
 - 아동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일상적으로 대해야 한다.

4)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그러나 아동복지, 의료, 구급, 교육 등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 중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사람은 반드시 아동학대 신고를 해야 하고(제10조 제2항, 신고의무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제63조 제1항 제2호). 또한 이들이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에 대한 아동학대를 저지른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제7조).

표 4 | 아동안전보호 상황 모니터링

질문		Yes	No	상세내용
신체 학대	아동의 몸에 폭행/폭력의 흔적이 있다.			
	아동이 (폭력에 의한) 일시적인 장애가 있다.			
정서 학대	아동이 지나치게 위축되거나 지나치게 공격적인 반응을 보인다.			
	아동과 보호자의 의사소통 방법이 부적절하다. - 단어사용, 표정변화, 스킨십 등			
성학대	아동에 대한 성학대 정황이 발견되었다.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 해박하고 조숙한 성지식, 성적 인 묘사를 한 그림 등			
방임	아동이 입고 다니는 의복(교복)이 청결하지 못하다.			
	아동의 가정환경이 아동에게 안전하지 않다. - 청결, 위험도구 유무 등			
	아동의 식사가 부적절하다. - 시간, 반찬, 식기류 등			
	아동이 적절한 의료적 조치를 받지 못하고 있다.			
	보호자가 아동의 생활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 학교생활, 방과 후 활동 등			
	아동의 최근 관심사항을 보호자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 취미, 친구, 여가시간 등			
	아동이 가정에 혼자 방치되는 시간이 있다. * 있다면, 시간/사유 표기			
	아동이 부당하게 강요당하는 부분이 있다. - 강제적인 노동 혹은 외출, 아동이 원하지 않는 종교행위, 조혼 등			

* 출처: 세이브더칠드런 난민아동 지원사업 가정방문 체크리스트 일부 발췌

** 이 체크리스트는 난민 아동이나 보호자를 만날 때 아동의 안전과 보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모니터링 시 하나라도 Yes가 있는 경우, 아동학대로 의심하여 추가 관찰 및 신고가 필요합니다.

표 5~표 8의 내용은 실제 사례가 아니며 일반적인 아동학대 사건을 근거로 작성한 것임을 밝힌다.

표 5 | 아동학대 사례1(신체적 학대 또는 정서적 학대, 방임에 해당하는 아동노동)

000은 인도적 체류 지위를 받은 난민 아동입니다. 000은 초등학교를 졸업과 동시에 중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1개월여간 부모님과 떨어져 타 지역에 위치한 곳에서 일하며 기술을 배웠습니다. 000의 부모는 한국 공교육을 받는 실익이 없다고 생각하여 일찍 기술을 배우는 것이 000의 미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부모님의 뜻을 따랐던 000은 자신의 미래에 고민하다가 부모님을 여러 번 설득하여 학교 입학에 허락받았습니다. 학기가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난 후에 시민단체의 조력을 받아 인근 중학교에 입학 절차를 밟을 수 있었습니다.

표 6 | 아동학대 사례2(방임에 해당하는 외국인 등록 미비)

000은 한국에서 난민으로 체류하고 있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는 출입국·외국인청에 아이의 출생을 알리고 외국인 등록을 하는 것을 차일피일 미뤘습니다. 부모는 출생일 후 3개월 안에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과태료가 늘어난다는 것을 알았지만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본국 대사관이 없어 자녀의 여권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000은 1살을 넘긴지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날 집에서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하였습니다. 000의 부모는 과실치사죄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표 7 | 아동학대 사례3(난민 아동에게서 발견되는 아동학대 징후)

000은 한국에 와서 다른 난민 아동들과 함께 초등학교에 중도 입학한 십대 청소년입니다. 000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에게서 학대를 받았다는 것을 난민 활동가에게 알렸습니다. 000은 고국에서부터 정서학대와 언어 폭행, 신체 폭행을 받아 왔으며 아버지는 한국으로 피난 온 후 여러 번 가정을 비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실 000에 대한 학대는 여러 차례 징후를 통해 조기에 발견될 수 있었습니다. (징후 1) 어느 날부터 갑자기 000은 학교에서 다른 학생들에게 자주 폭력을 휘둘렀고 폭력의 강도가 점차 심해져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릴 정도였습니다. (징후 2) 000은 중병이 있는 어린 동생이 병원진료를 갈 때마다 2주씩 학교를 빠지고 통역인 역할을 했습니다. (징후 3) 000은 주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와 사회복지기관에 하루에도 수차례씩 전화를 걸어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징후 4) 000은 아버지가 일하는 곳에 종종 불려가 일을 했으며 일할 때에는 학교를 빠졌습니다. (징후 5) 000은 팔에 깃스를 한 적이 있는데 병원치료를 끝까지 받지 않고 스스로 깃스를 풀었습니다.

표 8 | 아동학대 사례4(성학대와 교육방임에 해당하는 조혼)

000은 가족과 함께 한국으로 와 인도적 체류 지위를 받은 난민 아동(여)입니다. 난민 활동가는 가정방문을 하던 중, 부모가 000의 혼인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000는 6학년을 마치기 전인 만 13살에 20대 초반의 사촌과 혼인을 하였습니다. 000의 학교에서는 한국 학생과 달리 혼인을 위한 자퇴를 설득으로 막거나 고발 조치를 못하고 경찰의 동석 하에 000의 혼인 의사를 확인한 후 자퇴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조력을 해온 난민 활동가가 혼인하지 못하게 설득하자 000의 가족은 난민 활동가에게 알리지 않고 혼례를 치렀습니다. 000와 000의 어머니는 000이 혼인과 결혼생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강제가 아니라 본인의 의사임을 난민 활동가에게 주장하는 한편 000의 혼인이 당시 한국 법에 따라 처벌 받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 주의: 2020년 5월 19일부터 16세 미만의 아동과 성적 행위를 한 19세 이상의 성인은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05조). 이 법은 한국에서 해당 난민이 본국의 전통 또는 종교에 따른 혼인 상태에 있다 해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표 9 | 아동학대 행동적 징후⁵⁾

신체적 학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심을 느낌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인 경계 - 특정물건을 계속 밟고 있거나 물어뜯음 - 행동장애(반사회적, 파괴적 행동장애) - 신경성 기질 장애(놀이장애) - 정신신경성 반응(히스테리, 강박, 공포) - 언어장애 - 극단행동, 과잉행동, 자살시도 - 실수에 대한 과잉반응 - 부모와의 접촉에 대한 두려움
성적 학대	<p>〈성적 행동지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 - 해박하고 조숙한 성지식 - 명백하게 성적인 묘사를 한 그림들

5)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 업무대응 매뉴얼1. 아동학대조사” (2020).

성적 학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인과의 성적인 상호관계 - 동물이나 장난감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인 상호관계 <p>〈비성적인 행동지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축, 환상, 유아적 행동(퇴행 행동) - 자기 파괴적 또는 위험을 무릅쓴 모험적인 행동 - 충동성, 산만함 및 주의집중장애 - 혼자 남아 있기를 거부 또는 외톨이 - 특정 유형의 사람들 또는 성에 대한 두려움 - 방화/동물에게 잔혹함 - 비행, 가출 - 약물 및 알코올 남용 - 범죄행위 - 우울, 불안, 사회관계의 단절 - 수면장애 - 유뇨증/유분증 - 섭식장애(폭식증/거식증) - 야뇨증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 저조한 학업수행
방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절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옷차림 - 음식을 구걸하거나 훔침 - 비행 또는 도벽 - 학교에 일찍 등교하고 집에 늦게 귀가함 - 지속적인 피로 또는 불안정감 호소 - 수업 중 조는 태도 - 잦은 결석

2 아동학대에 대한 민감성

현재 대부분의 난민 지원 활동은 성인 위주로 진행되며, 아동이 있는 경우에도 주로 가족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동의 상황을 인지하고, 문제로 인식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아동이 있는 가정을 지원하는 난민인권활동가는 난

민의 입국부터 난민인정심사의 진행, 정착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아동의 상황과 의사를 잘 살펴야 한다. 아동이 한국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기 위해서는 난민인권활동가에게 아동권리와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DON'T	D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 아동의 형제자매에 대한 무관심 - 피해 아동의 가족에 대한 험담과 편가름 - 피해 아동의 진술을 재확인하고 경험을 여러 차례 진술시키는 것 - 학대 행위자를 적대시함 - 피해 아동의 정보 유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 아동의 형제에 대한 정서적 학대 및 기타 학대 정황에 관심을 가짐 - 학대 행위자에게 무엇이 학대에 해당하는지 정보를 제공하고 좋은 양육방법을 안내하고 교육하는 것 - 사례에 접근 가능한 전문가들 사이의 비밀 유지 의무의 확인 - 아동에게 불리고 싶은 이름이 무엇인지 물어보기 - 아동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고, 자기표현을 어려워하는 아동은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 아동의 관점에서 아동의 감정 및 상황을 이해하기

3 난민인권활동가의 예상 가능한 우려에 대한 대응

학대 행위자 역시 난민인 경우, 현장의 난민인권활동가는 지원 대상인 난민을 아동학대 행위자 또는 피해자로 신고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예상 가능한 우려는 다음과 같다.

1) 난민과 단체 사이의 신뢰관계가 무너질 수 있고, 신고 사실 또는 신고를 시도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난민이 단체와의 연락을 끊을 수도 있다는 우려

하지만 아동학대가 우려될 때 빠른 개입만이 아동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 또한 아동학대에 대한 개입이 반드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복지적 접근 역시 가능하다. 즉 방임이나 중대하지 않은 신체적 학대의 경우, 적절한 개입은 오히려 가정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어떤 접근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하다. 아동학대는 어느 나라에나 존재하며, 대부분의 나라에서 심각한 범죄로 인식된다. 아동학대에 대한 단호한 대처는 학대 행위자와 그 공동체에 아동학대가 한국 사회에서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리고, 올바른 양육에 대한 관

심을 불러일으키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아동학대 신고자의 신원은 법에 의해 보호된다. 신고자가 원치 않는다면 신고 사실이 아동학대 행위자 또는 행위자의 가족에게 알려지지 않는다.

2) 신고 시 학대 행위자뿐 아니라 피해 아동의 체류자격이 모두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

체류자격의 연장 및 박탈 등의 문제는 당사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난민인정자의 경우, 수감 등의 범죄가 체류자격의 박탈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 이후 귀화신청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또한 미등록 이주아동이 학대 피해를 당한 경우 구제절차가 진행될 때까지 체류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3) 피해 아동이 보호자에 대한 신고를 주저할 때의 우려

많은 경우, 특히 스스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연령의 피해 아동은 신고를 주저하기도 한다. 이때에는 신고 및 조사에 최대한 협조하도록 아동을 설득하고,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 전문기관 직원 등이 상황을 적절하게 판단하고 개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조사 및 보호 기간 동안 체류자격과 난민심사절차에 대하여 적극 지원한다.

4) 이주아동이라는 이유로 시설 보호 등 지원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

아동복지시설의 보호 아동 중 난민인정자인 아동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생계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로 지정되지 않는 그 외의 이주아동 생계비는 기초수급자의 지원 금액을 고려하여 지방비로 지원된다(보건복지부의 「2020 아동분야 사업안내」 pp. 142, 180 참고).

4 조사 과정

학대 피해 난민 아동은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로 인해 도움을 요청할 곳이 많지 않으며, 보호자와의 애착관계와 체류자격의 불안정성의 문제가 중첩되어 다양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수사과정에서 법률가나 난민인권활동가는 필요시 난민의 특수한 상황 또는 체류자격, 난민신청절차에 대해 담당 사회복지사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사례관리 담당자 등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1) 절차의 고지

아동학대 사건의 처리 절차는 외국인은 물론 한국어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사람 및 법률전문가도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난민인권활동가는 관련 절차에 대해 숙지하여 사건이 발생할 경우 피해 아동과 학대 행위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 아동이라면 반드시 두려워 할 권리를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난민인권활동가는 아동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학대 행위자는 아동학대에 대한 개입을 본인에 대한 적대적 행위로 생각해 방어적인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절차의 올바른 진행은 더 좋은 양육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잘 설명해야 한다.

표 10 | 아동 진술의 신빙성과 법원의 판단

아동의 진술에 대하여 대법원은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압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 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 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검찰에서의 진술 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 사물, 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예1: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는 비교적 명확하고 분명하게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 또는 진술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인 사례에 대해 법원은 이는 “실제로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기억대로 진술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것을 두려워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

예2: 아동이 CCTV의 시각에서 넘어져 어떻게 넘어진 것인지 확인할 수 없고 오로지 아동의 진술에만 의지해 사건의 진실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서 아동의 진술이 번복된 경우, 법원은 교실에서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을 학대하였다고 단정한 아동의 어머니가 여러 차례 질문을 반복하여 피해 아동에게 학대 행위에 대한 암시를 주어 아동의 진술이 오염되었다고 판단

2) 통역인과 난민인권활동가의 협업

정보의 제공 및 의사의 확인을 위해서는 통역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아동 및 청소년을 통역할 때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 아동이 유도형 질문과 제안형 구절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아동으로부터 진실 되고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 통역인은 난민인권활동가와 함께 아동친화적인 면접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2. 아동이 편한 환경에서 본인의 경험을 진술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제3의 지지자가 필요한지, 아동과 같은 성별의 통역사를 배치하는 게 좋을지, 아동이 믿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비밀 엄수에 관한 안내를 정확히 하였는지 등 난민인권활동가와 협력해 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상담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⁶⁾
3. 난민 아동은 특히 미성년자의 징집, 아동 인신매매, 여성 할례, 가정폭력, 강제 결혼 혹은 조혼, 노예노동 또는 유해한 노동, 강제 노동, 강제 성매매, 아동 포르노그래피 등의 박해 경험이 있을 수 있으며, 가족과 강제로 떨어져야 했던 경험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성인과의 일반적인 관계가 형성

6) 유엔 난민기구, “난민인정절차에서의 통역인을 위한 핸드북(Handbook for Interpreters in Asylum Procedures - unit 9)” (2017), p.140.
<https://www.refworld.org/docid/59c8b3be4.html>

- 된 경우 특히 난민 아동의 특수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통역인이 필요하다.
4. 아동은 때로 자신만의 고유한 방식으로 의사를 표현하기 때문에 통역인과 난민인권활동가는 아동의 의사 표현을 세심하게 살필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
 5. 아동이 강제 이주로 인해 공동체 안에서 정서적, 사회적, 인지적 발달을 제때 거치지 않았다면 아동은 무의식적으로 모국어와 그 문화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아동을 통역할 때에는 성인을 통역할 때보다 훨씬 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 면접이라기보다 대화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아동에게 주는 것도 좋다. 통역할 때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가능한 단순한 말을 사용해야 하고, 또 몇 번씩 말을 되풀이해야 할 수도 있다. 상담 시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다듬거나 몸짓이나 그림 같은 다른 보조 수단을 이용해 아동이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도울 수도 있다.⁷⁾

난민인권활동가는 생애 주기에 따른 아동의 특징, 아동의 출신국, 종교, 문화 등 다양한 특수성을 인지하고 그에 따른 면담 기법을 적용해야 한다. 면담 중 난민인권활동가는 통역 내용을 주고받을 시, 구체적으로 정황을 기록할 수 있는 적절한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아동이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적절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족의 내밀한 이야기를 다루게 되므로 비밀유지 등 통역인 윤리를 잘 준수하도록 훈련이 잘된 통역인을 선임하도록 한다. 이후에도 난민의 특수성과 비밀유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상기해야 한다.

통역인이 자주 변경되는 것은 피해 아동에게는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사전에 통역인 및 통역서비스를 미리 확보해 피해 아동이 여러 번 상담을 받아도 같은 통역인과 면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 아동, 고문 생존자,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 다양한 성지향과 성적체성을 가진 개인 등 특정한 필요나 취약성을 가진 난민의 통역요청에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다.

7) 유엔 난민기구, “자율학습 모듈3: 난민 맥락에서의 통역(Self-Study Module 3: Interpreting in a Refugee Context)” (2009), <https://www.refworld.org/docid/49b6314d2.html>

통역인이 피해 아동 또는 학대 행위자, 보호자와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내밀한 이야기를 취급하는 데 도움이 되고, 통역인이 자신의 편이 되어준다는 인상도 줄 수 있다. 또한 같은 국가 또는 문화권 출신의 통역인은 문화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소통의 시간을 단축해주기도 한다. 다만, 이 경우 통역인의 비밀유지 의무에 대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통역인은 상담에서 알게 된 기타 업무 관련 사항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거나 논의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통역인은 비밀유지협약이 상담 후에도 계속된다는 점을 이해하고, 이에 동의해야 한다.

그림 5 | 비밀유지협약서(통역인용)

통역인 비밀유지 및 행동 규범 서약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국적	성별
대한민국 내 주소		전자우편	
		연락처	
직업	소속	통역 일시 및 장소	
<p>본인은 통역 역할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동의합니다.</p> <p>비밀 유지 의무</p> <p>1. 통역을 통해 알게 된 정보를 기밀로 유지하고 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예방 조치를 취하는 데에 동의하며, 특히 아래와 같은 정보를 인터넷, 출판, 방송 매체, 출신국 정부 등 외부에 누설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역 대상자의 인적사항 - 주소, 전화번호 - 사상, 신념, 건강에 관한 정보 			

- 유전정보, 범죄경력자료
- 고유식별정보

공정성 유지 의무

- II. 통역 진행 과정에 있어서 구술의 일부를 생략하거나 요약하여 전달하지 않고, 정확하고 완전한 통역을 제공하며, 질문과 답변의 의도를 명확히 이해하고 통역하겠습니다.
- III. 통역 내용에 대해 나의 감정이나 견해를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통역을 할 때 의견을 제시하거나 의견을 섞어 통역하지 않겠습니다.
- IV. 통역 대상자를 존중하며, 대상자의 말을 선불리 판단하거나, 훈계 혹은 옹호하는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 V. 통역가로서의 공정성을 위해 통역 대상자로부터 금전 또는 그 밖의 혜택을 받지 않으며, 또한 통역 대상자를 대신하여 그러한 혜택을 받지 않겠습니다.
- VI. 공정성과 진정성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접촉이나 교류를 하지 않겠습니다.
- VII. 통역 과정에서 성, 연령, 종교, 문화 등 다양한 특수성을 고려하며, 아동친화적인 면접을 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의 의무

VIII. 책임 수행 중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모든 사실을 _____(단체/기관 이름) 담당자에게 알릴 것을 약속합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상황에 놓일 경우 즉시 보고하겠습니다.

- 통역 대상자와의 공적 또는 사적 관계
- 통역 활동의 방향과 불일치하거나 양립될 수 없는 고용관계 또는 사적 이해관계
- 통역가의 역량을 떨어뜨릴 수 있는 기타 부수적인 요소
(개인의 건강/심리상태, 가치관, 정치적 신념, 종교, 성별, 배경설명 부족 등)

_____ (단체/기관 이름)의 통역가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입수하게 된 통역 대상자 또는 업무 관련 정보를 공개하거나 상의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본인이 입수한 정보의 기밀을 유지할 의무는 활동 기간이 종료된 뒤에도 계속된다는 점을 인지합니다.

서약일

서약인 성명

(서명)

3) 체류자격 및 난민신청과정에 대한 설명 및 조력

난민인권활동가가 아동보호 절차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직원은 난민인정절차나 난민심사, 난민의 체류자격에 대해 잘 알지 못할 수 있다. 난민인권활동가는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해 아동학대 처리 절차 진행이 체류자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난민인정심사 단계에 따라 아동이 어떻게 보호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시해야 한다.

【 표 11 】 아동학대 신고 전 아동의 체류자격

난민 아동의 주요 체류자격	설명
미등록	체류기간의 만료, 국내 출생 후 미등록 등
난민신청자(G-1-5)	난민신청자. 난민인정심사 절차가 진행 중인 자
인도적 체류자(G-1-6)	난민인정자는 아니지만,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 또는 그 밖의 상황으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사람으로서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
G-1-99	한국에서 출생한 난민신청자의 자녀
G-1-12	한국에서 출생한 인도적 체류자의 자녀
F-1-16	한국에서 출생한 난민인정자의 자녀
F-2	난민법상 난민 인정을 받은 사람

피해 아동이 이주아동인 경우 재판과 수사 등 권리구제 절차가 끝날 때까지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부여된다. 이때, 1) 권리구제 절차가 무엇인지 2) 구제절차 종료 이후에 체류가 가능한지에 대해 이해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4(아동학대피해자에 대한 특칙)

- ① 법무부장관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의 아동학대범죄를 이유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외국인 아동 및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의 보호자(아동학대 행위자기는 제외한다)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권리구제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체류 연장기간 만료 이후에도 피해 회복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은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는 “권리구제 절차”에 포함된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출입국관리법」의 관련 조항에 명시된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에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사례관리 또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조사절차가 포함되는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특히 출입국관리본부의 공무원은 아동학대에 대해 잘 알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조사나 아동보호 전문기관(특히 위탁되어 운영되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사례관리를 법적인 절차라고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체류자격 신청 지원 시 난민인권활동가는 출입국관리 공무원에게 아동학대 구제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조사 중인 아동학대 사례에 대해서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정도의 사실만 확인 받을 수 있다.

만일 미등록 이주아동이라면, 체류자격을 새로 신청해야 한다. 「체류업무 자격별 안내 매뉴얼」에 의하면 ‘성폭력 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G-1-11 체류자격을 부여한다. 대상자, 기간 및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다.

▣ 그림 6 ▣ 하이코리아 체류업무 자격별 안내 매뉴얼⁸⁾ 부분 발췌

8. 성폭력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G-1-11)

가. 대상자

- 체류외국인 중 **성폭력범죄, 성매매 강요, 상습폭행·학대, 심각한 범죄 피해** 등을 이유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민·형사상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나. 체류허가기간

- 체류기간 1년 부여

라. 제출서류

-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소송관련 서류 등 권리구제 입증서류
- 신원보증서

체류자격의 연장 역시 1년 범위에서 가능하다.

8. 성폭력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

가. 체류허가기간

- 1년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 연장허가

다. 제출서류

-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② 소송관련 서류 등 권리구제 입증서류
- ③ 신원보증서
- ④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8) 2020년 11월 12일 기준. '체류업무 자격별 안내 매뉴얼'은 수시로 변경되므로 최신 매뉴얼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체류자격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조사가 진행 중이어야 한다. 다만, 피해 아동이 이미 난민신청자, 인도적 체류허가자, 난민인정자라면 이미 가지고 있는 체류자격이 G-1-11 비자보다 더 많은 사회복지제도의 적용 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조항은 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자격 신청에 더욱 적합하다.

표 12 | 출입국관리 공무원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연계 사례

피해 아동 A는 난민신청자(G-1-5)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었다. A는 지속적인 아동학대를 피해 원가정에서 탈출하였지만, 진행 중인 난민심사의 결과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다. 마침 2019년 4월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되어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해 체류자격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제25조의4 제1항). 개정된 규정은 구제절차 기간 동안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므로 조사 중인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요청하여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 확인서를 공문으로 받았다.

그러나 담당 출입국·외국인청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조사 중이라는 사실 확인서만 가지고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은 어렵다는 의견이었다. 정식으로 경찰에서 수사하여 법원의 재판이 진행되도록 하고 그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였다. 또한, 이 규정에 근거한 체류기간 연장은 모든 구제절차가 종료되고 난 뒤에도 유지된다고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안정적인 체류자격이 있다면 그 체류자격을 유지하라고 상담해주었다.

다행히 아동에 대한 난민심사의 결과, 인도적 체류허가(G-1-6)를 받을 수 있었다. 인도적 체류허가가 더 안정적으로 체류를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따라서 더 이상 학대 피해 아동으로 A의 체류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없어졌다.

급하게 원가정에서 탈출한 아동의 경우 여권을 소지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 이 경우 기존 지원단체에 연락하여 여권 사본을 우선 확보한 뒤 ‘여권 원본 미제출 사유서’(그림 7)를 만들어 출입국·외국인청에 사본과 함께 제출하여 체류자격 변경, 연장이나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이때 외국인등록증용 사진은 기존의 사진과 다른 것을 사용해야 하므로 새로 찍어야 한다.

표 13 | 학대 행위자가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내어주지 않은 사례

학대 피해 아동 B는 학대 행위자인 부모로부터 급하게 분리되는 과정에서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나오지 못했다. 학대 피해 아동은 학대 행위자들과 다시 마주치는 것을 꺼리고 있다.

하지만 상황이 아무리 안타깝워도 제3자가 주거에 들어가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가져올 수 없다. 이런 경우에는 우선 (1) 학대 행위자를 설득하여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받아내야 한다. 다만, 시안과

같이 이러한 설득에도 불구하고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2)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모두 재발급 받아야 한다. 외국인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기 위해서 여권이나 기존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확보하면 도움이 된다. 이들의 난민신청절차를 지원한 단체가 있다면, 이들이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의 사본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먼저 연락해 보고, 출입국·외국인청 난민과가 난민심사신청서를 접수하면서 받아놓은 사본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난민과를 찾아 난민심사기록의 사본을 요청할 수도 있다. 다만 여권은 본국 대사관 방문이 어려운 난민신청자의 입장에서 재발급이 사실상 어려울 수 있다.

그림 7 | 여권 원본 미제출 사유서 샘플

여권 원본 미제출 사유서 (SAMPLE)

여 권 번 호	a00000000	발 급 일 자	2020. 1. 1.
영 문 성 명	Hong Gil-dong	유 효 기 간	2029. 12. 31.
전 화 번 호	010-0000-0000	생 년 월 일	2015. 1. 1.
외국인등록번호	150101-800000		
주 소			

Gil-dong은 2015. 1. 1. 출생한 OO국적의 여성입니다. 2020. 1. 2. 가족과 한국에 입국하여 난민신청을 하였고, 현재는 난민신청자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난민인권활동가에 의해 Gil-dong에 대한 아동학대 사건이 인지되었고, 학대 행위자와 긴급하게 분리하는 과정에서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가져오지 못하였고, 여전히 학대 행위자인 부모가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차례 강력하게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의 반환을 요구하였지만 이들은 이에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의 원본 없이 체류자격 연장이 어려워 외국인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020. 7. 3.

신청인 Gil-dong

부록 아동학대 관련 난민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 규정

난민법은 난민인정자가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2조는 난민 아동이 특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고, 제19조는 ‘모든 아동’은 폭력과 학대, 유기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며, 당사국 정부는 아동학대를 막고, 학대로 고통 받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국제인권규범과 국내법은 난민/이주 아동의 학대에 대해 국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주아동의 학대에 대하여 법무부와 보건복지부의 장관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하기도 하였다.⁹⁾

「난민법」

제31조(사회보장) 난민으로 인정되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사회보장기본법」 제8조 등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다.

제32조(기초생활보장) 난민으로 인정되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2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신청에 따라 같은 법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른 보호를 받는다.

제38조(난민인정자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의 배제) 난민인정자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상호주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2조

당사국 정부는 **난민 아동이 특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9) 국가인권위원회(2017). 학대피해 이주아동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category/decisionView?menuid=001010&searchaseq=112108110&searchcate=107&searchmaincate=51¤tpage=2&id=4283>

제7조

모든 아동은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를 지니며, 부모가 누군지 알고, 부모로부터 양육 받을 권리를 지닌다.

제9조

모든 아동은 아동의 이익이 침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부모와 함께 살 권리를 지니며, 부모와 떨어져 살 경우 부모를 만날 권리를 가진다.

제19조

모든 아동은 폭력과 학대, 유기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며, 당사국 정부는 아동학대를 막고, 학대로 고통 받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34조

당사국 정부는 모든 형태의 성 착취와 성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지며, 의무 이행을 위하여 아동을 성적으로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5조

당사국 정부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모든 형태의 약취유인이나 매매,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6조

당사국 정부는 아동복지에 해가 되는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39조

당사국 정부는 무력분쟁과 고문, 학대, 폭력 등을 경험한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회복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23조(공공구제)

체약국은 합법적으로 그 영역내에 체재하는 난민에게, 공공구제와 공적원조에 관하여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대우와 동일한 대우를 부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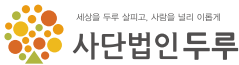
난민 아동 학대 대응 가이드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후견인, 기타 아동양육자의 양육을 받고 있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나 유기적 대우, 성적 학대를 포함한 혹사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 19조 제1항 -

[난민인권네트워크 난민아동실무그룹]



발행처: 난민인권네트워크

집 필: 사단법인 두루, 세이브더칠드런,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 MAP, 이주민센터 친구

협 력: 유엔난민기구

난민 아동 학대 대응 가이드는  세이브더칠드런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